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27
------------	------

2025년 9월 9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11일, 최윤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윤희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 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66㎡ 이상의 교실에 두어야 하지만,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44㎡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한 유연한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관내 학교는 교실 면적 부족을 이유로 특수학급 수용 여건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안은 66㎡ 이상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44㎡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6㎡ 이상의 여유 교실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4㎡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최윤희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927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최소 면적을 66㎡로 하되 해당 학교에 66㎡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면적기준을 44㎡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해당 학교에 66㎡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실당 66㎡ 이상인 면적 기준을 44㎡ 이상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¹⁾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면적을 교실당 66㎡ 이상으로 하고, 시·도 조례에서 학교 여건과 특수교육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44㎡ 이상까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이에 안 제5조제3항은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해당 학교에 66㎡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실당 66㎡ 이상인 면적 기준을 44㎡ 이상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기존 교사(校舍)의 공간적 제약으로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학급 확대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 특히,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1조는²⁾ 교육감에게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시책(통합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해당 조문의 신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신설 기준 완화를 통해 통합교육의 현장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덧붙여 안 제5조제3항은 특수학급 신설을 위한 최소 교실 면적을 사립유치원의 보통학급 신설 기준과³⁾ 동일한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한편, 동 조문은 서울시 내 일반학교 968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1,679개 중 사립학교에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23교의 53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사립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2025학년도 관내 학교급·설립유형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⁴⁾

(단위 : 교, 개, 명, 2025.4.1. 기준)

학교급	특수학교 운영 학교 수			특수학급수			정원 합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유치원	139	-	139	153	-	153	612	-	612
초등학교	501	-	501	883	-	883	5,298	-	5,298
중학교	219	2	221	341	3	344	2,046	18	2,064
고등학교	86	21	107	249	50	299	1,743	350	2,093
합계	945	23	968	1,626	53	1,679	9,699	368	10,067

- 관내 사립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2025학년도를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3)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2023.9.)의 「사립유치원 인가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인가 시 보통교실 기준 면적은 “원아 1인당 면적 2.2㎡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학급 수는 44㎡ 이상을 충족(3세반 20명 정원 기준)하는 보통 교실의 수로 인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자료 :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2023.9.), 「사립유치원 인가 업무 처리 기준」, 16쪽.)

4) (특수교육과)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1709번)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8202, 2025.8.19.)를 분석, 정리함.

기준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한 곳도 없고, 중학교는 전체의 1.8%인 2교, 고등학교는 전체의 10.5%인 21교에 불과합니다.⁵⁾

-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사립 일반학교 324교 중 55교가 이미 1실 이상의 일반교실을 44㎡ 이상 66㎡ 미만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6교는 44㎡ 이상 66㎡ 미만인 공간을 일반 교실이나 교과교실, 특별교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⁶⁾
- 이런 상황에서 안 제5조제3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요구에도 공간 부족으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학교에 기준 면적 완화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해당 학교에 66㎡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 기준까지 마련하고 있지 않는바, 동 규정안의 적용 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관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0439, 2025.8.20.)⁷⁾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 개정으로 특수학급 면적이 축소되어 해당 교실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이 저해될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 동 조례 개정에 따라 면적이 축소 설치되는 특수학급의 경우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가 있는지? (최재란 의원)

5) 전체 사립학교 수(초등학교 38교, 중학교 109교, 고등학교 200교)는 「2024년 유초중등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함.

6)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1703번)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9335, 2025.8.19.) 자료를 분석, 정리한 것임.

7)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0439, 2025.8.20.)

- 특수학급은 일반학급과 달리 규모가 작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교육활동 운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현재 특수학급 면적 축소로 인한 불편보다 특수학급 부존재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함.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 일부에서 동 조례안을 근거로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작은 규모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음.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김경훈 의원)
-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u>